

예산총칙

2012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21,645,210	9,649,356
일반회계	300,147,210	9,004,416
특별회계	21,498,000	644,940
기타특별회계	21,498,000	644,94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359,915	10,797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35,711	1,071
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	62,972	1,889
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	14,606,935	438,208
지하수관리특별회계	371,833	11,155
주차장특별회계	6,060,634	181,819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 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,445,993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9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와 재해대책의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, 지방교부세, 시비보조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, 계속비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

※ 의존자원 표시

국고보조금→국 광역·지역발전→광 기금→기 시비→시 특별교부세→특세
특별교부금→특금 지방채→지